



영국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정보신청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

I.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제정

영국의 금융서비스 시장법은 영국 내 모든 형태의 금융·보험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단일하고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산업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법은 1998년 6월 입법안이 제출되어 2000년 6월 14일 공포되었으며, 2001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본 법은 총 30장 433개조와 2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제정 배경

1980년대 초까지 영국의 금융시장은 각종 은행,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및 로이드(Lloyd's)와 같은 증권 및 보험시장,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각 영역은 자율적 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1986년 금융시장의 빅뱅(Big Bang) 현상으로 은행, 보험, 증권회사 사이의 전통적인

업무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규제 및 감독체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빅뱅이란, 영국 금융기관들의 영업 분야 확장에 대해서 정부가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영역의 금융기관들에게 영업 분야의 제한을 풀어준 것에서 유래하였다.

증권거래소 및 로이드 등 증권시장과 보험시장은 오랫동안 각각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빅뱅현상에 대응하여 1986년에 제정된 금융업법은 각 시장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비정부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증권투자위원회는 직접적인 감독활동을 하는 대신, 여전히 각 시장 내의 자율적인 규제기관에 위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금융업법에 의한 규제의 복잡성과 규제영역의 중복 등은 이후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III.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법적 성격

금융서비스 시장법은 증권시장의 규제를 담

당해왔던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 예금시장의 규제를 담당해왔던 은행법(Banking Act 1987), 보험시장의 규제를 담당해왔던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1982) 등 기존의 금융관련 규제법들을 대체하여 제정되었으며, ‘금융통합규제법’ 적인 성격을 가진다.

IV.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주요 내용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은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금융 관련 영업행위를 그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대상 영업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는 규제대상이 되는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허가 취득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영국 외의 EU 국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적용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또한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허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시장법은 본 법이 적용되는 규제대상 행위 전체에 대한 허가절차를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본 법의 부칙 6에 명시된 허가의 필수요건들은 각 규제대상 행위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의 자격, 영국 내에서 신청인의 영업소재지 요건, 신청인의 특수관계에 대한 규제 권한, 적정자본금의 요건, 신청인의 적격성 등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개인들에게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개인이라 함은 은행원이나 펀드매니

저, 로이드의 보험인수대리인 등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과 직접 거래하거나, 고객의 재산을 취급하는 업무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금융서비스 시장법은 금융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본 법은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해당 거래를 지속하고, 불리할 때에는 범위만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유인을 제공한 것이다.

금융서비스 시장법은 업무상 투자 참여권유와 같은 금융상의 권유행위에 대한 규제를 이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금융업 허가를 받은 자의 금융상의 권유행위는 관계 기관에서 규정한 업무행위규칙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자의 권유행위는 금융서비스 시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권유행위에 관한 업무행위규칙을 위반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권유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V.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설치

금융서비스 시장법에 의해서 금융업에 대한 통합감독권한을 가지는 단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이 설치되었다. 금융감독청은 형식적으로는 특별사법인으로 독립된 비정부기관이며, 금융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로 운영된다.

1986년 금융업법에 근거하여 증권부문규제를 담당하였던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가 1997년 금융감독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그 후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은행 및 보험회사의 규제감독권한까지 이어 받았다. 현재 금융감독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의 금융관련 규제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감독청의 규제 및 감독대상은 주택금융회사와 공제조합, 신용조합, 금융자문업, 펀드매니저, 파생금융상품시장, 로이드 보험시장, 원유 및 금속거래소, 에너지 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시장 및 거래소 등이다.

금융감독청의 활동 목적은 금융체계의 유지와 개선, 금융감독에 관한 대중 홍보, 소비자 보호, 금융관련 범죄 예방 등에 있으며, 이에 관하여 금융서비스 시장법에 근거한 일반적 규칙제정권이 있다.

VI.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구성

금융서비스 시장법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art 1 THE REGULATOR
- Part 2 REGULATED AND PROHIBITED ACTIVITIES
- Part 3 AUTHORISATION AND EXEMPTION
- Part 4 PERMISSION TO CARRY ON REGULATED ACTIVITIES

- Part 5 PERFORMANCE OF REGULATED ACTIVITIES
- Part 6 OFFICIAL LISTING
- Part 7 CONTROL OF BUSINESS TRANSFERS
- Part 8 PENALTIES FOR MARKET ABUSE
- Part 9 HEARINGS AND APPEALS
- Part 10 RULES AND GUIDANCE
- Part 11 INFORMATION GATHERING AND INVESTIGATIONS
- Part 12 CONTROL OVER AUTHORISED PERSONS
- Part 13 INCOMING FIRMS : INTERVENTION BY AUTHORITY
- Part 14 DISCIPLINARY MEASURES
- Part 15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 Part 16 THE OMBUDSMAN SCHEME
- Part 17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 Part 18 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S AND CLEARING HOUSE
- Part 19 LLOYD'S
- Part 20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MEMBERS OF THE PROFESSION
- Part 21 MUTUAL SOCIETIES
- Part 22 AUDITORS AND ACTUARIES
- Part 23 PUBLIC RECORD,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 Part 24 INSOLVENCY
- Part 25 INJUNCTIONS AND RESTITUTION
- Part 26 NOTICES
- Part 27 OFFENCES
- Part 28 MISCELLANEOUS
- Part 29 INTERPRETATION
- Part 30 SUPPLEMENTAL

김 봉 철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